

구미시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  
민간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# 구미시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|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|--|
| 의 안<br>번 호 |  |
|--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23. . .  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핵가족화·맞벌이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로 돌봄서비스 확대 필요
- 아이의 건강한 성장 및 부모의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아픈아이 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사 무 명 : 구미시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

나. 추진근거

- 1)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2)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3조(아이돌봄 지원의 원칙)
- 3)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2조(자녀양육지원의 강화)
- 4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)
- 5) 「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」 제10조, 제11조, 제13조

다. 위탁사무 :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 전반

- 맞벌이 등 자녀의 긴급 질병 대처가 어려운 가정에 아픈아이 병원진료동행 등 돌봄서비스 제공

#### 라. 시설개요

- 1) 소 재 지 : 구미시 백산로 19, 1층(송정동)
- 2) 규 모 : 99.2㎡(30평)
- 3) 지원시설 : 돌봄(간호)실, 놀이(학습)실, 사무실 등

마. 위탁기간 : 2023. 6. ~ 2026. 5.(3년)

#### 바. 위탁조건

- 1) 수탁업무 외 위탁 및 법인, 단체사무 처리 불가
  - 2) 보조금 및 수익재산은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에만 직접 사용하여야 함
  - 3)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,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,  
구미시와의 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- 사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,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
- 아. 소요예산(산출근거) : 연간 134,340천원 정도(도비 30%, 시비 70%)

### 3. 부서의견

-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 
법인(단체)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

### 4. 참고사항

- 관련 법규 : 「아이돌봄 지원법」, 「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」
-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: 「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」 심의 결과 “적정”

# 아픈아이 돌봄센터 민간위탁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과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아픈아이 돌봄사업 추진, 인력 운영으로 재정소요가 예상됨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- 2023년부터 아픈아이 돌봄센터 설치 예정에 따라 사업 운영비를 산정하였으며,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- 가. 5년간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은 총 713,228천원으로  
연평균 142,645천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- 나. 2차 연도부터 운영비 매년 인상률 3%로 반영함.

(단위:천원)

| 구분 \ 연도 | 1차년도    | 2차년도    | 3차년도    | 4차년도    | 5차년도    | 합계     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세출      | 134,340 | 138,370 | 142,521 | 146,797 | 151,200 | 713,228 |

### 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천원)

| 구분 \ 연도 | 1차년도    | 2차년도    | 3차년도    | 4차년도    | 5차년도    | 합계     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국 비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
| 도 비     | 40,302  | 41,511  | 42,756  | 44,039  | 45,360  | 213,968 |
| 시 비     | 94,038  | 96,859  | 99,765  | 102,758 | 105,840 | 499,260 |
| 민 간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
| 기 타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
| 합 계     | 134,340 | 138,370 | 142,521 | 146,797 | 151,200 | 713,228 |

5. 부대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가족보육과 가족지원팀 박영실(054-480-6552)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| 구 분       | 금액(천원)  | 산출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합 계       | 134,340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인 건 비     | 105,900 | · 팀장(간호사) 급여 3,089,000원×1명×12월 = 37,068,000원 |
|           |         | · 돌봄사 급여 2,868,000원×2명×12월 = 68,832,000원     |
| 운 영 비     | 18,000  | ·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1,500,000원×12월 = 18,000,000원  |
| 사 관 리 무 비 | 10,440  | · 차량렌트비 420,000원×12월 = 5,040,000원   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| · 교통비 200,000원×12월 = 2,400,000원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| · 홍보물 제작 3,000,000원× 1종 = 3,000,000원         |

# 사진대지

## □ 위 치 도



## □ 현장전경

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아동복지법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~ ⑦ 생략

### □ 「아이돌봄 지원법」

제3조(아이돌봄 지원의 원칙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.

제4조(국가 등의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### □ 「건강가정기본법」

제22조(자녀양육지원의 강화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, 방과후 서비스,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 사업 시책(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·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□ 「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」

제10조(돌봄지원사업)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지원사업
2.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 및 부모의 자조모임 지원 등 돌봄사업
3.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1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조(위탁) ① 시장은 제10조,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지원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거나,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## □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

제5조(의회 동의)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
2.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3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| 소 관 부 서     |       | 가족보육과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입<br>안<br>자 | 과 장   | 황 은 채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팀 장   | 이 현 선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담 당 자 | 박 영 실<br>(480-6552) |